

## 제 18 장 환경

### 제 18.1 조 보호 수준

1.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과 자국의 환경발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환경 법, 규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 를 인정하면서,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, 규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, 그러한 환경 법, 규정 및 정책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.
2. 각 당사국은 보호무역주의 목적을 위하여 환경 법, 규정 또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.

### 제 18.2 조 다자 간 환경협정

1.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이 환경 보호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, 당사국 각자의 이러한 협정의 이행이 이러한 협정의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대함을 인정한다. 이에 따라,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과 국제무역협정 의 상호 지지를 증진시키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.
2. 이러한 목적으로, 양 당사국은, 적절한 경우, 상호 관심 있는 무역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협상에 대하여 협의한다.

### 제 18.3 조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

1. 어떠한 당사국도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,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, 자국의 환경 법, 규정 및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 된다.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 법, 규정 및 정책의 집행에서의 조사, 기소, 규제 및 준수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재량 을 행사하고, 집행에 대한 자원 배분에 관하여 선의의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유 한다.
2.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 법, 규정 및 정책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. 이에 따라,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무역의 장려를 위하여, 또는 자국의 영 역에서 투자의 설립, 인수, 확장 또는 유지의 장려를 위하여, 그러한 법, 규정 및 정책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, 규정 및 정책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,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거나 달 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.

#### 제 18.4 조 환경친화적 무역

각 당사국은 관련 비관세장벽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을 포함하여, 환경기술,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, 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.

#### 제 18.5 조 절차적 보장

제19장(투명성)에 따라 발생하는 이 장과 관련한 모든 사안은 제18.7조에 따른다.

#### 제 18.6 조 제도적 장치

##### 접촉선

1.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환경 사안을 위한 접촉선을 지정한다.

##### 임시 위원회

2.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임시 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,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. 임시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환경부 및/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관과 부처의 적절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다. 임시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한다.<sup>89</sup>

#### 제 18.7 조 협의

1.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 협의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협의 요청을 전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된다.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.

2. 제1항에 따른 협의로 해당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, 그리고 당사국이 그 사안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그 사안을

---

<sup>89</sup> 편리한 경우, 임시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적절한 국제기구의 회의에서 회합할 수 있다.

검토하기 위하여 제18.6조제2항에 따라 임시 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. 그러한 임시 위원회의 설치가 이 항에 따라 요청되는 경우, 그 임시 위원회는 과도한 지체없이 설치되고 그 사안의 해결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.

### 제 18.8 조 협력

1.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은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통하여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.
2. 협력분야는 환경 법과 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, 국제기후변화체제의 무역관련 측면, 무역관련 환경문제 및 생물다양성의 무역관련 측면을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.
3. 협력활동은 사람과 정보의 교환, 무역협정의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공유, 관련 지역 및 국제 포럼·학회 및 세미나에서의 협력과, 공동연구 또는 합작사업의 개발을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.

### 제 18.9 조 분쟁해결

어떠한 당사국도, 제18.5조에 언급된 것과 같은 사안을 포함하여,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다.